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 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2576호

시행일자 2019. 5. 30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고시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
-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4호 (2019.5.29.)
- 나.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046호 (2019.5.29.)
- 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2호, 2019.04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내용: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

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)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

조건 일부 변경([별표 3] 제 3호)

나. 시행일 : 2019. 6. 1

다. 문의: 044-202-2665 (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)

붙 임:1. 개정 고시문 1부.

2. 관련 Q&A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자 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 제휴